

# 함평신도시 한국아델리움 더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사업지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9-10번지 외 5필지
- 사업 개요 : 총 163세대 (지상1층 ~ 지상14층, 총 3개동 규모)

구 분	주택형	일반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기타공용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일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동 주택	74.9980A	88	74.9980	23.9680	98.9660	4.1353	9	2022년 3월예정 (변경될 수 있음)
	84.4040B	75	84.4040	27.6420	112.0460	4.6541	8	

####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구 분			74A		84A		합 계	
	장애인	전라남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건 설량의10%이 내)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등		2	(1)	2	(1)	4	(2)
	10년 장기복무군인		2	(1)	2	(1)	4	(2)
	중소기업근로자		2	(1)	2	(1)	4	(2)
	소계		9	(4)	8	(4)	17	(8)

####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0. 6. 12(금)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0. 6. 12(금)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7-2, (문의)061-323-2626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0. 6. 22(월)	청약Home(www.applyhome.co.kr) 사이트 통한 청약접수 ※ 현장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 - 신청 구비 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0. 6. 30(화)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I

# 특별공급자격

### ■ 기본요건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6. 12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li> </ul> <p>※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공인인증서 이용)</p>

# III

## 대상세대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대상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총 17세대

구분	내 용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거주요건 등의 우선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함]</li> <li>-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li> </ul> </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불필요]</li> <li>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청약예금의 예치금액&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8e6c9;"> <th>구 분</th> <th>광주광역시</th> <th>전라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li> <li>-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ul>						

-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함.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하오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자
  -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자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기존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기준 주택소유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함
-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진행하며 반드시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IV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 및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인터넷청약자	인터넷취약자
자격요건 확인 및 본인인증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청약시 입력기준	청약신청시 필수서류 - 청약마감시 간이후 제출불가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당첨이후 필수제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당첨이후 필수제출 사항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 자격확인 등 추가 필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당자만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자만 제출 [해당지역 신청시 제출]	

### ■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7-2

♠ 문 의 : 061)323-2626